

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제정 2015. 7. 28 조례 제1477호
일부개정 2017. 10. 2 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8. 5. 14 조례 제180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2조 삭제 <2018. 5. 14>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「노인복지법」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1. 학대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
2.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
3.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·조사
4.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

제4조(주민의 책무)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,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[제목개정 2018. 5. 14]

제5조(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)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7. 10. 2>

③ 위원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,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·국장, 대학교수,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
2.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 삭제 <2018. 5. 14>

제9조 삭제 <2018. 5. 14>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11조 삭제 <2018. 5. 14>

제12조(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[제목개정 2018. 5. 14]

제13조(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,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
2.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3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
4.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관련정보의 제공)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㉑ 까지 생략

② 「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㉒ 부터 ㉓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80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